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5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전자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4년 10월 08일(화요일) 오전 09시
- 2.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24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 5층
- 3.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별첨 1]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별첨 2]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백정현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오선환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김기수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내이사 강문규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권자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결손금 보전을 위한 감자결정의 건[별첨 3]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법규에 따라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Shadow Voting) 제도가 2018년 01월 0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본인)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법인인감 날인, 주주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임시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24(논현동)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

DIDIME&F

대표이사 김 대 은

직인  
생략

**별첨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생략 3. 생략 4.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일반법인, 일반개인, 기타법인, 투자조합, 소액주주, 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관계회사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재휴, 시설투자, 재무구조 개선, 인수합병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일반법인, 일반개인, 기타법인, 투자조합, 소액주주, 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관계회사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동일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b>회사가</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b>회사가</b>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일반법인, 일반개인, 기타법인, 투자조합, 소액주주, 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관계회사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b>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b>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재휴, 시설투자, 재무구조 개선, 인수합병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일반법인, 일반개인, 기타법인, 투자조합, 소액주주, 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관계회사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 ④ 현행과 동일	발행주식한도 제한 해제
	부칙(2024.10.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0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별첨2. 이사 후보자**

구 분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사내이사 후보	백정현	1985.09.27	3년	신규선임	2015~2022 프랜차이즈 수내닭꼬치 이사 2022~현재 프랜차이즈 닭꼬치그릴 총괄이사
	오선환	1976.01.23	3년	신규선임	2014~ 2018 호마이카코리아 이사 2018~ 현재 에스피멤버스 이사
	김기수	1969.07.06	3년	신규선임	2020~2024 주식회사 화우 대표이사 2020~현재 주식회사 금백코리아 대표이사
	강문규	1985.06.09	3년	신규선임	2016~2022 명인만두 근무 2022년~현재 면식당 물류총괄 이사
사외이사 후보	권자희	1952.05.05	3년	신규선임	2010~2017 카후나빌 이사 2018~2023 주식회사 이코셀드 이사

**별첨3. 결손금 보전을 위한 감자결정**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57,747,210	90%	2024년 10월 23일	5,774,721,000 (57,747,210)	577,472,100 (5,774,721)